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3,918,530	15,717,556
일반회계	491,065,696	14,731,971
특별회계	32,852,834	985,585
기타특별회계	32,852,834	985,58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95,432	185,863
수질개선특별회계	6,348,717	190,4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1,203	14,136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5,588,844	167,665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668,977	20,069
하수도특별회계	13,088,161	392,645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491,500	14,745

제 2 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638,123천원이고, 재난·재해예비비는 2,094,75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